



제43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처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2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처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5. 11. 20.
3. 회부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처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u>
<u><신설></u>	<u>5의3.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등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u>

6. ~ 9. (생략)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 16. (생략)

<신설>

17. ~ 21. (생략)

<신설>

※ 관련 조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행위를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7. ~ 2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를 받거나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제안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등이 적극행정을 할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적극행정을 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신 설>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결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극행정 신고는 제12조제16호의2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
--	--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처리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규정 제2조).¹⁾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의2)²⁾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³⁾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의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⁴⁾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

-
-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소관)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신고 대상 기관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기관을 ‘행정기관등’⁵⁾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처리·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⁶⁾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실익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의 경우 기존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외에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적극행정(소극행정 신고는 적절한 조치)을 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①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처리⁷⁾ 및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근거를 두는 것은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⁸⁾ ②「행정기본법」⁹⁾
및 「국가공무원법」¹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을 공공

7)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8)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 참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확산하고, 법령의 적극·유연한 해석 등을 통한 창의적·전문적 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처리(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9)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극행정 관련 법령 전반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며, ③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시 기존 운영 방식보다 강화된 방식인 “권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권고의 특성상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기관에서는 ‘준강제적 판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사안에 대해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결정하는 현재 적극행정 추진 체계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적용 범위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되는 한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명시적인 조사·처리 및 운영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는 개선임을 근거로 동의하는 입장임.¹¹⁾

□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제3항은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

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다만, 안 제29조의2제3항의 “권고하거나” 문구는 인사혁신처의 의견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9조의3제4항은 소극행정 신고 처리 시 적극행정국민
신청 관련 조문 중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의2제3항’에 대응하는 조문이 안 제
29조의3제3항에 존재함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제29조의2제4항
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0